

영등포구의회  
제173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김용범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2. 28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82호로 2013년 2월 18일 김용범의원 외 6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인권에 관한 구민의 권리 및 의무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책무를 정하고, 인권증진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4조)

다.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

-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(안 제6조)
- 라.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(안 제7조)
- 마.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회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0조 ~ 안 제16조)

#### 4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수준향상을 위해 구와 사업장, 기관 및 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, 인권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였고,
  - 안 제4조에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며,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7조에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,
  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 하고,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인권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인권보장과 수준 향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하위 법령인 자치구 조례의 특성상 다소 선언적 의미로 비취 질 수 있으나,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민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인권증진 활동에 이바지 하는 각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.